규정심의위원회규정 3-1-25

규정번호 3-1-25
제정일자 2016.1.12
최근개정 2026.2.6
개정차수 5차 개정
관리부서 기획평가팀

제1조(목적) 이규정은 우리대학의 학칙과 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)를 둔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
2. 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제 규정의 정리 및 편찬에 관한 사항
4. 규정 관련 교무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
5. 기타 제 규정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기획실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(개정 2026.2.6.)

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7인 이내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사안에 필요한 관련부서의 장을 회의에 배석토록 요구할 수 있고, 이때 배석인은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,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7.24., 2026.2.6.)

②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4.7.24., 2026.2.6.)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, 정리 또는 위원회 위임사항을 심의,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4.5.3.)

② 실무위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위의 장은 기획평가팀장이 되고, 위원은 관련부서의 팀장 및 실무담당자 중에서 기획실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제8조(연구비) 규정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주관 등) ① 위원회 및 실무위의 사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하고,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(제7조제1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1항·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항,제4조제1항·제2항)